

참고1 자격증 소지 대상자 가점 인정범위

구분	아래 자격증 소지 시 가점 (1가지 소지 5점, 2가지 이상 소지 시 10점)
컴퓨터 관련	1) 워드프로세서 2) 컴퓨터 활용능력 3) ITQ 자격증
복지 관련	사회복지사

참고2 관계법령에 따른 졸업예정 대상자 인정범위

- 초·중등교육법 제55조(특수학교), 제56조(특수학급)에 해당하는 경우

- 고등교육법 제2조(학교의 종류)에 해당하는 경우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1. 대학 2. 산업대학 3. 교육대학 4. 전문대학
5. 방송대학·통신대학·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(이하 "원격대학"이라 한다)
6. 기술대학 7. 각종학교
※ 학점은행제는 제외

참고3

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인정범위

구분	총점의 10점 가점	총점의 5점 가점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1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
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16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- 애국지사가 제6조1항*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* 6조1항: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애국지사의 가족 - 애국지사가 제6조1항*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* 6조1항: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- 제2항제3호*에 해당하는 자 * 제2항제3호: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·녀가 질병·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·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·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5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-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
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에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(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) * 제1호: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
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2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-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
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24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호*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* 제1호: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